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갑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10

발의연월일: 2020. 6. 29.

발 의 자: 송갑석·인재근·서삼석

조오섭 · 이장섭 · 민형배

안민석 · 권칠승 · 이동주

이인영 · 정춘숙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를 본 법에서 운용하여 왔으나, 정책의 일관성 및 국민의 이해도 제고 등을 고려했을 때, 관련법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,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규정을 삭제하고,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의6제1항).

법률 제 호
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6제1항 중 "산업재산권 및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(이하 "영업비밀"이라 한다)과"를 "산업재산권과"로 한다.

제40조의5제2항 후단 중 "영업비밀에"를 "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(이하 "영업비밀"이라한다)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20조의6(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제20조의6(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) ① 정부는 산 대한 실태조사) ① 정부는 산 업재산권 및 「부정경쟁방지 업재산권과 관련된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 하기 위하여 대학·연구기관 및 비밀(이하 "영업비밀"이라 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다)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·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 년 실시하여야 한다. ②·③ (생 략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40조의5(산업재산권 서비스업 | 제40조의5(산업재산권 - 서비스업 에 대한 실태조사) ① (생 략) 에 대한 실태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 (2) -----태조사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게 인력 현황·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 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전 단의 요청사항이 영업비밀에

해당하는	는 등	의	특별한	사유가
없으면	이에	협길	조하여야	하다.

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영업비밀(이하 "영업비밀"이라한다)에-----

③ (생 략)

③ (현행과 같음)